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6월 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보건소장 소예경)

- 가. 제안이유
 - 관계법령인 「지역보건법」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을 반영하고,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목적 및 기능(안 제1조 및 제2조)
 - 구성 및 위원의 임기(안 제3조 및 제4조)
 - 위원의 해촉(안 제5조)
 -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(안 제6조)
 - 회의 및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7조 및 제8조)

- 간사 및 회의록 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수당 등 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4년 주기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「지역보건법」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